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개정 대비표

■ 약관명: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 변경시행일: 2025년 6월 2일(월)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시행일 이후 자동재예치되는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하여 적용)

■ 주요 변경 내용: 디폴트옵선행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율 변경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제1조~제5조 <생략>	제1조~제5조 <좌동>	
제6조 (만기처리방법)	제6조 (만기처리방법)	
① <생략>	① <좌동>	
1. <생략>	1. <좌동>	
2. 「만기 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사용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u>최초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u> 하여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2. 「만기 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사용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u>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u>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재예치 시 계약기간 변경
3. <생략>	3. <좌동>	
제6조의 2 (재예치 기준일) <생략>	제6조의 2 (재예치 기준일) <좌동>	
제7조 (적용이자 및 이자계산)	제7조 (적용이자 및 이자계산)	
① <생략>	① <좌동>	
② 이 예금의 만기에는 계약기간별 약정이자율(만기이자율)을 적용하고, 만기일 이전에 제8조 사유로 특별중도해지(분할인출)하는 경우에는 제8조 이자율을 적용하며, 그 외 사유로 일부해지 (분할 인출)하는 경우	② 이 예금의 만기에는 계약기간별 약정이자율(만기이자율)을 적용하고, 만기일 이전에 제8조 사유로 특별중도해지(분할인출)하는 경우에는 제8조 이자율을 적용하며, 그 외 사유로 일부해지 (분할 인출)하는 경우에는	디폴트옵선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에는 일반중도해지 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 <신설>	일반중도해지 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 단,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별도의 일반중도해지 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적용대상</th><th>경과기간</th><th>중도해지금리</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 </td><td>1개월 미만</td><td>연 0.10%</td></tr> <tr> <td>1개월이상~ 3개월 미만</td><td>연 0.15%</td></tr> <tr> <td>3개월 이상~ 6개월 미만</td><td>연 0.20%</td></tr> <tr> <td>6개월 이상</td><td>가입(재예치시) 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차동률 x 경과율(단, 연0.20% 미만 시 연 0.20% 적용)</td></tr> <tr> <td rowspan="2">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 </td><td>32개월 미만</td><td>가입(재예치) 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80%</td></tr> <tr> <td>32개월 이상</td><td>가입(재예치) 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90%</td></tr> </tbody> </table>	적용대상	경과기간	중도해지금리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이상~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시) 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차동률 x 경과율(단, 연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	32개월 미만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80%	32개월 이상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90%	수정 반영
적용대상	경과기간	중도해지금리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이상~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시) 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차동률 x 경과율(단, 연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	32개월 미만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80%																	
	32개월 이상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90%																	
③ <생략> 제8조 ~ 제12조 <생략> 부 칙 <생략> 부 칙 <생략>	③ <좌동> 제8조 ~ 제12조 <좌동> 부 칙 <좌동> 부 칙 <좌동>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부칙	부칙	
<생략>	<좌동>	
부칙	부칙	
<생략>	<좌동>	
부칙	부칙	
<생략>	<좌동>	
부칙	부칙	
<생략>	<좌동>	
부칙	부칙	
<생략>	<좌동>	
부칙	부칙	
<생략>	<좌동>	
부칙	부칙	
<신설>	제1조 (시행일 등) 본 특약은 2025년 06월 02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디폴트 옵션 정기예금은 시행일 이후 자동재예치되는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명시